

쉽게 배우는 환경법

3차시.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

1. 물환경 분야의 환경법 및 제도

1.1 물환경 관리의 필요성

물과 이것의 이동통로 및 저장지 역할을 하는 하천, 호소 및 저수지 그리고 거기에 서식하는 동식물(수생태계)은 하나의 물환경(水環境)을 구성한다. 물의 양적, 질적 문제는 사람의 생존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수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물환경 구성요소간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물환경의 각 구성요소를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1.2 물환경 관련 법·제도의 발전단계

(1) 공해방지법 시대 (1960~1979)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1963년에 제정되면서 수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으나 이 시기에는 환경법이 환경문제 보다는 공해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소극적, 방어적’ 개념이었기 때문에 공해방지법 상 수질관리도 산업폐수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1966년에는 하수도법이 제정되어 도시의 우수와 하수를 효과적으로 배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2) 환경보전법 시대 (1980~1989)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보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초로 수질환경기준, 수질오염의 상시측정체계, 배출시설허가제, 배출부과금제도, 수질문제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오염피해분쟁제도 등 수질환경정책의 진일보가 이루어졌다. 특히 1989년에는 정수장 중금속오염 사건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3) 수질환경보전법 시대 (1990~1998)

그동안 단일법으로 운영되었던 환경보전법이 1990년 8월 1일에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개별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낙동강폐놀 오염사고(1991) 및 낙동강 유기오염용제 오염사고(1994) 등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수질오염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특히 음용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확대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심각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존대책을 보완하여 제2차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낙동강폐놀오염사고에 대한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94년 1월 「낙동강유기용제오염사고」가 발생하여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다. 이것을 계기로 1990년 1월 승격되었던 환경처가 1994년 5월에 다시 환경부로 확대되어 건설부의 상하수도국과 보사부가 관장하던 음용수관리과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6개 지방환경청이 4대강 환경관리청 및 3개 지방환경관리청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시·도로 일원화되었던 시도단속권한이 다시 이원화 되었다.

1996년에는 「물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12월에는 수질오염이 가장 심한 낙동강수질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낙동강수질 개선대책」이 수립되었다.

(4) 유역관리법제 시대 (1999 ~ 2005)

1990년대 후반에는 시화호문제, 새만금호문제, 4대강 식수원 오염문제 등 환경현안은 끊이질 않았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각종 대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의 수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자치단체 등과 총 420여회의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우리나라 환경정책사에 큰 획을 긋는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완성하였다.

1998년 11월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2000년 10월에는 금강 및 영산강 수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다. 또한 이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8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7월에는 나머지 3대강에 대한 특별법이 각각 제정·시행되었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은 그간의 수질관리대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상하류 공영(win-win)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유역,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 그리고 유역구성원들이 수질보전을 위해 협력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하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오염총량제, 수변구역제도, 물이용부담금제, 상수원지역 지원 및 토지매수제 등 강력하고 선진적인 물관리 정책을 도입하였다. 특히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었던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2004)을 마련하여 수변구역 지정, 수변녹지 조성, 도시지역의 저류지 건설, 하천부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 사용 제한, 축산분뇨 자원화 촉진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다각도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5)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의 시대 (2006 ~)

수질환경보전법을 근간으로 마련된 4대강 기본계획이 2005년 마무리됨에 따라 2015년 까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먹 감을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본 계획은 기존의 유기물질관리의 중심에서 수생태계의 건강성, 유해물질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하천·호소·연안의 전국토 관리, 제도의 내실화 및 발전, 비점오염원, 가축분뇨의 본격적 관리, 유역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계획은 2007년 5월 17일에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그 추진에 더 탄력을 받았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4대강 수계에 대하여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다. 수질 및 수생태계의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였다.

1.3 물환경 관리 법률현황

물환경 관리와 관련한 환경부 관할 법률은 크게 수질보전 관련한 법률과 상하수도관리를 위한 법률로 나눌 수 있는데 수질보전 관련 법률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이며 상하수도관리를 위해서는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등 3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오염 예방장치로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이 있고, 보다 포괄적이고 광역적인 오염예방은 토지법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보안림 등이 그것이다.

오염규제법으로는 기존의 오수·분뇨·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2006. 9. 27) 오수분뇨는 생활하수의 관리 법제인 하수도법에 의해 통합 관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축산폐수는 가축분뇨로 개념을 재정립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에 의해 규율하며, 산업폐수와 비점오염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각 규율된다.

또한 광역수계 단위의 유역관리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하천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토해양부 소관의 하천법과 행정안전부 소관의 소하천정비법이 있으며, 지하수 수질에 관한 법제로는 지하수법(국토해양부-환경부 공동관장), 먹는샘물관리 법제인 먹는물관리법(환경부소관), 온천지하수관리 법제인 온천법(행정안전부소관), 해양심층수 관리 법제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소관) 등이 있다.

<표1> 물환경관리 법률현황

수자원 / 홍수통제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국토해양부) -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수질보전	오염예방	-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환경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국토해양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배출규제, 비점오염원관리(환경부) - 하수도법: 시·비시가화지역하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환경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처리 - 개별건축물의 오수처리	
	오염규제 관리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금강수계·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변구역, 총량규제,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 수계관리위원회 등(환경부) *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신규제정; 국토해양부)	
		유역관리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금강수계·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변구역, 총량규제,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 수계관리위원회 등(환경부) *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신규제정; 국토해양부)
	물이용	수도공급	- 수도법: 수도사업의 인가 및 수돗물의 공급 등(환경부)
		지하수	- 지하수법: 지하수의 개발과 보전(국토해양부-환경부 공동관장) -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허가(환경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용수개발(농림수산식품부) - 온천법 : 온천지하수개발 허가(행정안전부)
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 하천법: 하천정비 및 유수점용 허가(국토해양부)
			하천관리

1.4 수질오염관리 제도

(1) 수질배출부과금제도

가. 개요

-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는 환경자원을 공공재산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개인도 환경자원의 사용과 이에 따른 환경질의 오염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즉, 환경자원사용에 따른 오염비용을 사용자가 지불하게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법적근거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수질 배출부과금의 종류 및 산정방법

- 수질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부과단가 및 부과계수를 곱하여 부과

- 초과 부과금의 산정 방법

· 기준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에 사업장규모(5종 ~ 1종)에 따라 50만원에서 4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이내 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오염물질량에 대하여 부과단가 및 부과계수를 곱하여 부과

- 기본부과금의 산정방법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2012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5.5448(환경부 고시 제2011-186호)

다.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초과부담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 : 19종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트비페닐,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크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총질소, 총인

-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 : 2종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가. 도입배경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개별 오염원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하천에 유입되는 총 배출량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수질환경 기준 초과하는 문제 발생

나. 개념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과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 하단부에 목표수질(C0)과 기준유량(Q0) 설정
- 구역의 환경관리상태,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배출총량 L1)을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
- 목표수질을 만족하기 위해 구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허용총량 L2)을 수질모델링기법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이 산정
- 이 경우 L1 - L2는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줄여야 될 오염부하량(삭감총량 L3)이 되며,
- 오염총량관리제는 배출총량(L1)이 허용총량(L2) 이하가 되도록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지역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

L0(기준배출 부하량)

= C0(목표수량) × Q0(기준유량)

L1 = 구역에서 배출되는 총량 (배출총량)

L2 = C0를 만족하기 위해 구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총량 (허용총량)

*L2가 목표지점에 도달되어 L0가 됨

L3 = L1 - L2 (삭감총량)

L1(배출총량) < L2(허용총량)

<표2> 총량관리와 농도관리의 비교

구 분	총량관리	농도관리
규제방식	폐수중 오염물질 부하량을 규제 *오염부하량(L) = 농도(C)×폐수량(Q)	폐수중 오염물질 농도를 규제 *농도(C) = 오염부하량(L)/폐수량(Q)
환경기준과 관계	직접적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부하량 이내로 오염물질의 배출총량 할당·규제	간접적 하·폐수배출시설은 환경기준 및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기준 적용
장점	-규제효과 높음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환경용량이 하 로 항상 유지되므로 환경기준의 준수가 보장됨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오염물질 다량 배출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소량 배출자에게는 적은 부담을 주게 됨.	-기준설정 용이 지역별로 기준농도만 정하면 되므로 기준설정이 용이 업소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업소별 기준설정 용이 -집행용이 및 저비용 배출량에 상관없이 농도검사만으로 기준 준수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단속이 용이
단점	-허용 오염총량의 설정에 어려움 유역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적 기법을 통한 허용부하량과 오염원별 허용총량을 정하여야 하나, 입력정보, 모델링 기법, 허용총량의 배분방법 등 불확실성 상존 -집행 애로 허용총량 준수여부 관리·감독에 어려움	-규제효과 미흡 오염원 밀집지대 또는 폐수 다량배출 업소가 있는 경우 농도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많아져 환경기준의 준수가 곤란 -소규모 배출자에게 불리 폐수량에 관계없이 동일농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적게 내보내는 자가 불리하여 형평성 시비 우려

다. 의의

■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수질목표를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수질 모델링 기법 등 과학적 수단을 이용하여 유역에서 어느 정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여도 되는지를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수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배출농도규제, 획일적인 토지규제(건축면적규제)의 모순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환경규제를 보다 효율적·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오염총량관리제는 규제만을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가 아니라 지역개발계획,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토록 함으로써 수질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 광역·기초지자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목표를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별, 개별오염자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을 할당하여 상호간에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역 관리가 가능하다.

■ 상·하류 유역 구성원의 참여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 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하여 유역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목표수질 설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등의 과정이 진행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가능하다.

(3) 수변구역제도

가. 도입배경

하천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완충작용을 거치지 않고 하천에 유입됨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에 따라 “팔당등 한강상수원 수질개선대책(1998)”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4대강 모두 적용되고 있음

나. 지정현황

2011년 12월 31일 기준 수계별 지정된 수변구역 면적은 총 약 1,200km²임

<표3> 4대강 수변구역 지정 현황

수계 구분	시 · 군 · 구	시 · 군 · 구	수변구역 면적(km ²)	비 고
총 계			1,199.992	
한강 수계	소 계		190.202	
	경기도	남양주시(8.094), (26.276), 광주시(9.611), 가평군(26.263), (32.970), 여주군(45.374)	148.588	최초 '99.9.30 변경 '02.8.26 '03.2.10 '03.7.28 '09.2.18
	강원도	춘천시(15.712), (5.344)	21.056	
	충청북도	충주시(20.558)	20.558	
낙동강 수계	소 계		338.362	
	울산광역시	울주군(4.960)	4.960	최초 '07.9.18 추가 '04.6.29 ()
	경상북도	안동시(64.320), (27.830), 청송군(61.374), 포항시(10.340), (10.776), (17.170), 청도군(22.439)	214.249	추가 '05.10.28 () 추가 '06.12.29 () 변경 '07.9.20 ()
경상남도	양산시(5.137), (2.850), 산청군(45.824), (38.390), (20.912), 하동군(6.040)	119.153	추가 '07.10.11 () 변경 '09.2.18 변경 '11.5.18 변경 '11.10.27	
금강 수계	소 계		372.787	
	대전광역시	동구(1.580)	1.580	
	충청북도	보은군(26.530), (128.314), 영동군(28.860)	183.704	최초 '02.9.18 변경 '09.2.18 변경 '10.12.7
	전라북도	진안군(111.730), (27.893), 무주군(21.320)	160.943	
영산강 · 섬진강 수계	소 계		298.641	
	전라남도	순천시(70.480), (17.240), (2.280), 보성군(67.847), (73.177) 장흥군(49.700), (3.620), (14.297)	298.641	최초 '02.9.18 변경 '04.5.10 '04.9.2 추가 '06.1.9 () 추가 '06.9.19 () 변경 '09.2.18 변경 '09.9.11 ()

다. 관리내용

-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동주택, 공장 및 축사 등의 신규 오염원 입지 제한
- 수변구역내의 토지는 단계적으로 협의 매수하여 수변 녹지 조성
- 수변생태계의 복원 및 비점오염원의 영향 저감

- 기존시설은 수변구역 지정 후 3년경과 후부터 BOD 및 SS를 10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

라. 제외지역

- 이미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 환경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예정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 자연마을

(4) 비점오염원관리제도(모두 변경하였습니다. 교체해주세요.)

가. 도입배경

-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비점오염원의 설치시 신고하게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및 사업장에서의 비점오염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제53조)

나. 대상개발사업 및 사업장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다(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항)

-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공항의 건설,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표준산업분류번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음·식료품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점

○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 한 날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개발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라. 방지시설의 설치

○ 개발사업

-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 공사개시 전까지
- 공사 완료 후에 동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 시설: 공사 준공시까지

○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마. 방지시설설치 면제

○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음(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한함)

-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라 함은 사업장의 입지 , 사업장 내의 토지이용·관리상황 및 비점오염원의 발생·유출흐름 등을 바탕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

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참고문헌

- 김홍균, 2010, 환경법, 홍문사
- 이순자, 2012, 환경법, 법원사
- 박균성, 함태성, 2012, 환경법, 박영사
- David Wilkinson, 2002, Environment and Law, routledge